

책임있고 믿음있는 서비스 제공, 인천지점



인천지점을 들어서자마자 큰 창에 쏟아지는 따사로운 햇빛과 확 트인 사무실 전경이 밝고 화창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직원들의 표정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높이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인천지점은 경제수도 인천(光州)의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인근에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 위

치하고 있으며, 주차가 편리하고 사무실환경이 깨끗한 교원공제회관 인천회관 1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인천지점은 조합원수는 2015년 2월말 기준 총 396개사(출자좌수)로 조합원의 보증 및 공제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지점 내 4명의 직원이 조합원사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점의 직원들은 항상 조합원사의 입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친절한 안내와 응대로 신뢰받는 조합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매월 1회의 지점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친절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 및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점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재성 지점장은 지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점 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융화를 바탕으로, 솔선수범의 자세 견지

및 쌍방향식 대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직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과의 소통 활성화, 조합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확대, 조합원에 대한 책임있고 믿음있는 업무지원서비스 확립의 세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정하여 조합의 경영목표실현과 함께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조합의 경영목표와 지점에서 추진하는 세부추진목표들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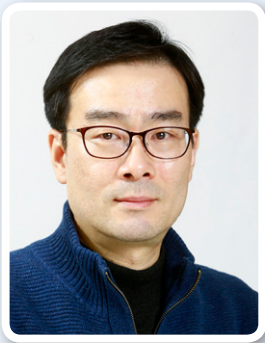
뒷줄 왼쪽부터 박주영 과장 · 김준섭 대리, 앞줄 왼쪽부터 최상순 부지점장 · 정재성 지점장

조합은 항상 조합원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락처 : 인천지점(032-426-8080)

100세시대...인생 재테크가 필요하다

은퇴 후 자식보다 든든한 금융설계 서둘러야



원정호
건설경제신문 기자

시중 유행하는 말 중 재수가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장수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삶든 100세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18년 고령사회,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보통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가 되면 '고령사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154년, 영국은 99년, 미국은 90년, 독일은 77년 소요되었고 일본은 35년 걸렸다. 우리는 26년만에 돌파한다.

반면 공적연금의 노후 준비도는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공적연금의 실직소득 대체율은 미국이 39%인 데 비해 한국은 19%에 그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사적연금 자산은 한국이 16%, 미국이 120%다. 더욱이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재정적자는 2012년 GDP의 34% 수준에서 2060년 약 220%수준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공적연금만 믿다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노후 준비를 놓쳐 노인들의 빈곤율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노인 상대빈곤율(2010년 기준)은 47.2%로 OECD 평균 12.8%를 크게 앞질렀고 33개국 중에선 1위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가는 은퇴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민간 금융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국가에서 하는 역할과 민간이 하는 역할이 상호 작용해야 고령화 해결책이 나온다”면서 “고령화 위기를 정부에 기대고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유기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수립해 실천해가고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연금상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연령 장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 85세 도달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장수대비상품이 상반기 중 출시된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나온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 자녀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보다 해당 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비건강인 연금상품’도 개발돼 2016년 초에 나온다. 건강이 좋지 못해 종신 연금상품 가입을 주저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노후자산 확보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과 개념이 비슷하지만 비건강인 연금은 고혈압, 암, 당뇨 등 만성이나 중증 질환자를 위한 것이다. 만성 중증 질환자에 대한 통계청 통계를 뽑고 상품을 설계해야 해 다소 늦게 출시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과 장기 간병보험

이 혼합된 ‘노인장기 요양연금’ 상품도 손질하기로 했다.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보험사 임의적 기준에서 탈피,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대상도 1~2급에서 1~5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다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한 신개념 상품도 상반기 중 출시된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의 일부를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노후에 암이나 치매 등에 걸릴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연금 적립액의 25% 수준까지 자유롭게 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 상품도 상반기 중 나온다. 현재는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일정 비율은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의료비 학자금 등 개인 이벤트 발생시 유용하다.

노후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8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을 75세로 높여 고령층들도 손쉬운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인데 비해 노인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해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해준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이 10~20%, 통원의 경우 1만 8000원~2만8000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인실손은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 후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각각 20%, 30%씩 추가 공제해 기존 실손의료보험료 대비 70~80%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보험료 갱신이 1년마다 이뤄지므로 가입자의 연령 증가 및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공제 및 일반업무 관련 Q&A

1. 근로자재해공제 Q&A

질문1. 근재공제 및 산재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반면 근재보험[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 Workmen’s Compensation)’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EL: Employer’s Liability)’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EL을 말함]은 근로자의 재해가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민간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재해공제**는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을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으로 사용하여 민간손해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수준과 동일한 상품을 공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5~10%저렴하게 판매하는 조합원을 위한 사용자배상책임 공제 상품을 말합니다.

질문2.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사도 근재공제를 가입할 수 있나요?

☞ 반드시 산재를 가입한 업체만 가입할 수 있습

니다. 현재 국내근재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를 판매하고 있는데, 사용자배상책임담보는 산재에서 보상하고, 산재초과분에 해당되는 손해배상만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의 공사단위 계약의 경우, 원청자가 산재를 가입한 경우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근재공제)과산재보험의차이점

	근재보험(근재공제)	산재보험
가입주관	손해보험사	노동부산하근로복지공단
담보내용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과실여부와상관없이업무상의재해보상
보상내용	1인당, 1사고당으로결정 ※산재초과분으로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기타 소송비용을보상함	유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 요양보상(치료비)은실손보상 나머지는평균임금의 일정일분

질문3. 원청자가 여러곳인 경우 조정계수는 어떤 업체 것을 사용하나요?

☞ **도급비율이 큰 업체의 조정계수를 사용**합니다. 다만, 도급비율이 동일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근재공제로 납입실적이 큰 업체의 조정계수를 사용합니다. 계약서상에 원도급자가 2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도급비율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4. 계약자가 제조업체인 경우 두종류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보험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업종별로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연간포괄임금총액도 각 사업장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의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비중이 큰 업종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인수 시에는 제조원가명세서(현장직 근로자의 인건비 확인), 손익계산서(사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확인), 사업자등록증(신규가입업체의 경우) 등의 서류를 받아 실제 사업내용을 면밀히 확인, 위험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5. 건설업체가 사용자배상책임을 가입할 경우 피공제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연간포괄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및 해당업체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각 원청자 및 하청자를 모두 피공제자로 설정해야 합니다(단, 하청업체는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외주공사비를 노무비로 포함할 경우 설정 가능함).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 먼저 원수급인이 전체공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제가입을 할 때 피공제자는 그 원수급인과 각 하청업체가 됩니다.

또한 원수급인이 자신의 직영근로자에 대해서만 부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해당 원수급인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하청업체가 자신이 맡은 하도급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공제 가입하는 경우 피공제자에게는 해당 업체뿐 아니라 그 공사의 원 도급업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청자를 아는 경우 원청자명을 기재하고 모를 경우 '관련원청자'로 기재하세요.

(사유 : 원청자의 관리감독 책임 발생 시 근로자가 직접 원청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발생이 경우 원청자가 피공제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하청업체에게 청구하고 보험자는 보상 후 구상권 행사 가능)

질문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연간포괄계약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제조업체 : 제조원가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제기간 종료 시 실제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산(추징/환급)후 갱신가능
- 공사장별계약
공사계약서, 공사비(노무비)내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원/하청자)

질문7. 연간계약을 가입하려고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받았는데 어떤 것이 인건비인가요?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상여금을 합산하시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를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에는 임원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합니다.

질문8. 인건비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

☞ 근재공제는 인건비가 공제료의 산출기초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 계약서 상에 인건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 건설공사 노무비 고시 비율에 의거하여 도급 공사일 경우 총공사금액(VAT 제외)의 28%이고, 하도급 공사일 경우 총공사금액의 32%를 노무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그 이하로 부분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9.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의 사고도 근재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지점이나 계약자로부터 근재공제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사고도 보상해 주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보상 가능합니다. 계약자인 사용자가 일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노무비를 지급하기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산재보험에서의 급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용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사고는 산재에서 보상가능하며 과거에는 근재에서 면책 처리하였으나 현재에는 면책 처리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여 부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0. 분납특약을 첨부한 공제계약의 경우 분납공제로 납입유예기간은?

☞ 분납공제료의 납입유예기간(납입최고기간)은 각 분납 응당일자로부터 1개월이며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납입 최고기간 내에 분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질문11. 사고발생 후 보상한도액이 감액되나요?

☞ 근재공제 사고발생으로 보험금 지급 후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어서 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근재공제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제기간 내의 사고는 보상한도액의 감액 없이 보상합니다.

질문12. 공사명이 전기 공사일 경우 사업의 종류 선택은?

☞ 근재보험의 가입대상인 소규모 하청업체들의 경우 업종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

업, 상하수도업, 가스업, 전기업이 그러한 업종입니다. 통신, 상하수도, 가스, 전기관련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들의 경우 건축 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케이블 설치공사를 한다고 통신업을 적용하거나 건물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한다고 상하수도업을 적용하거나 정화조공사를 한다고 하수도업을 적용하거나 가스배관 공사를 한다고 가스업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기관련 공사의 경우 특히 단가계약 관련 공사의 경우 전기업이 아닌 건설공사입니다. 통신업은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에스케이텔레콤과 같은 통신회사의 업종이고, 상하수도업은 물을 저장, 소독, 여과, 송수,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및 가스업은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 사업과 천연가스의 채취 및 제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질문13. 재하수급인의 사고 시 보상여부

☞ 불법 또는 위법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는 당연히 사고 시 면책이 되겠지만, 상기와 같은 위법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료를 받고 계약을 인수한 이상 사고발생 시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현재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1)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2) 전문건설업자 역할의 본질(직접시공)을 유지하며 (3)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의 지위가 악화되지 않으며 (4)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누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 업체에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에게 재하도급 사실이 서면통보 되어야 함)

질문14. 공기연장 시 추가공제로 발생여부?

☞ 근재공제 공제료 산출기초는 근로자의 노무비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 노무비 변동 있을 경우 : 추가공제로 발생
- 노무비 변동 없을 경우 : 추가공제로 발생하지 않음

2. 영업배상책임공제 Q&A

질문1. 엘리베이터 보수작업 중 엘리베이터를 망가뜨릴 경우 영업배상책임공제 증권으로 보상이 됩니까? (매우 중요)

☞ 조합원사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 자체에 입힌 손해 즉, 작업의 대상물 자체(엘리베이터)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 도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질문2. 도급업자에서 지하매설물, 폭발, 진동, 붕괴가입 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이 경우에는 재보험자로부터 구득을 받으셔야 하므로 동부화재 신희철 차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업무 Q&A

보증업무

질문1. 보증 이용중인 잔액과 남아있는 보증여유한도는 어디서 조회 가능한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업무거래현황에서 현재 이용 중인 보증잔액과 보증여유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증잔액은 해제되지 않고 계류 중인 잔액을 의미합니다.

질문2. 보증서를 발급한 세부내역(이용현황) 조회는 어디서 하는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보증이용명세에서 '현재시점'으로 조회 시 현재 계류 중인 보증 내역이 나타나며, '발급시점'으로 기간조회 시 해제된 내역까지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질문3. 보증한도 부족 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 보증잔액이 부족하여 보증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한도를 늘릴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①,②,③,④의 방법으로도 한도부족 시 ⑤출자좌수 증자를 하셔야 합니다.

- ① 기존 발급한 보증건 중 해제가능한 보증 해제
- ② 선급금보증 등 지급보증 한도는 용자금 상환하여 한도증액
- ③ 신용등급이 상향되었는데 약정은 이전 등급으로 되어있는 경우 약정갱신하여 한도증액
- ④ 용자금 미이용시 또는 상환시 보증배수가산제 이용
- ⑤ 출자좌수 증자

질문4. 보증수수료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보증수수료계산에서 보증종류,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입력 후 산출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른 수수료요율이 적용되어 보증수수료가 산출됩니다(단, 고액보증 특별심사, 공사이행보증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에 추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질문5. 보증신청 내용에 수정사항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미승인 보증신청인 경우(당일) : 인터넷 온라인지점의 '보증신청 수정/신청 취소'에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단, 보증금액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취소 후 재신청만 가능합니다.

☞ 승인(발급완료)된 보증의 경우

- 계약건명, 보증채권자명, 계약일, 계약이행기일, 보증기간 변경 : 오타나 착오로 잘못 신청하여 승인(발급)이 완료된 경우 기재사항변경 신청에서 해당항목을 수정하여 신청하시면 기재사항이 변경된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단, 기존에 발급된 계약보증의 변경계약으로 계약이행기일 및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는 공기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액 변경 시 : 보증금액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보증서를 취소처리 하시고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단, 변경계약으로 보증금액 증액 또는 감액 시에는 취소·재발급이 아닌 추가보증 또는 감액보증으로 처리).

질문6. 계약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계약보증잔액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 계약보증은 보증기간이 경과되어도 자동 해제되지 않고 다음의 경우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①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②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③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④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 ⑤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때 (2011.11.25 기준으로 이전 발급건은 소멸시효 5년

적용, 이후 발급건은 소멸시효 2년 적용)

보증기간이 지나 준공처리된 공사임에도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증내용 확인 후 위 자료를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질문7. 인터넷 보증을 잘못 신청하거나 신청 중 전산오류로 수수료 결제가 되면 반환가능한지?

☞ 인터넷보증을 잘못 신청하거나 신청중 오류 발생 시 신청단계(승인전)에서 수수료 결제가 된 건은 조합에서 신청취소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해 조합원의 결제계좌로 당일 환불됩니다. 잘못 신청하였는데 보증승인이 완료된 건은 관할 지점에 연락하여 보증취소 처리를 하고 수수료는 환불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8. 기존에 발급된 보증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공기연장 시 어떻게 신청하는지?

- ☞ 증액 시 : 증액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및 보증금액으로 '추가보증신청'하면 조합에서 추가 보증서를 발급해드리고 이 경우 당초 보증서와 연계되어 보증효력이 발생합니다.
- ☞ 공기연장 시 : 변경된 계약이행기일로 '공기연장신청'하면 조합에서 공기연장보증서를 발급해 드리고 당초 보증서와 연계되어 보증효력이 발생합니다.
- ☞ 증액·공기연장 시 : 위 두가지 경우의 보증서가 각각 발급되고 당초 보증서와 연계되어 보증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9. 여러장의 공기연장 또는 추가 보증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여 발급이 가능한지?

☞ 동일공사의 계약보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공기연장 또는 증액의 대상이 되는 원보증서들을

각각 공기연장 또는 증액 신청을 한 후 통합출력보증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출력보증서에는 기존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금액, 보증기간이 통합 기재되어 발급되고 통합출력보증서의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지점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10. 전자보증(G2B) 신청 시 계약(관리)번호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 ☞ G2B 보증신청 화면의 계약(관리)번호 입력시 숫자 또는 영문 사이에 바표시(-)등 특수문자는 입력하지 마시고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 ☞ 보증채권자가 군부대인 경우 계약(관리)번호 앞에 dapa를 붙여야 합니다.
- ☞ 보증채권자가 한국도로공사인 경우 계약(관리)번호 앞에 ex를 붙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증신청 화면의 'G2B안내'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질문11. 선급금지급보증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 2013.9.4부터 선급금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선급금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한도 초과인 경우, 영문표기보증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점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12. 영문표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 입찰보증(정액입찰보증 제외),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중에 한하여 영문표기 보증서 발급(지점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액과 계약금액은 원화로 표기하되, 필요시 외화보증금액을 병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13. 전자보증(G2B/B2B)이 무엇이며 전자보증이 가능한 기관은?

- ☞ 전자보증이란?
조합원사의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의 편리를 위해 조합과 보증채권자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증신청과 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전자전송방식(B2B/G2B)을 의미합니다.
- ☞ 전자보증이 가능한 기관 또는 회사는?
조합과 전자보증협약이 체결된 공공기관 또는 건설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조달청, 한전 및 한전계열사 12개사, 현대건설 외 민간건설사 약 40개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질문01. 기계대여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지?

☞ 건설기계 사용요청 시 대여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가 없는 대여건은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질문02. 일대 계약 시 대여횟수 미정 이유로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증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 건산법의 보증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해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간 주 00회 또는 월 00회 또는 사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후 대여횟수 및 금액이 증가된 경우 증액된 보증금액으로 추가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03. 일대 계약인 경우도 보증서 발급 대상인지?

☞ 일대 계약도 보증서 발급 대상입니다. 단, 당일 사용, 당일 대금결제인 경우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04.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이 보증 대상인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건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05. 보증서 면제대상의 공사도중 대여금액 증액 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증액되는 시점에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06. 원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할 경우 보증 면제대상인지?

☞ 원도급자 직불은 보증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질문07. 보증서 미제출 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 영업정지처분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질문08. 포괄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도 면제되는지?

☞ 포괄대금지급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설법 제68

조의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문0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

☞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27종)를 말하며, 유사장비라 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닙니다.(예: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질문10. 보증이 가능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등록된 대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은 그 대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나머지 구성원(연명등록자)은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명등록자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명등록자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상의 '상호 및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의 최종소유자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연명 등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11.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는?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12. 건설기계가 (가)압류 상태인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 기계 대여에 문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압류 관련으로 기계사용의 문제발생시 채권자(기계대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제업무

질문01. 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재보험 가입가능여부?

☞ 반드시 산재를 가입한 업체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재상품의 보상범위가 산재를 초과하는 보상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사고처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02. 근재가입 시 1인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가입했는데 사고 시 1억원을 보험금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1억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은 보상한도이므로 사고로 인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03. 현장직만 근재를 가입한 경우 내근직 사원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여부는?

☞ 내근직 사원에 대하여 별도로 근재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내근직 사원에 대한 공제요율은 현장직 대비 20%대에 불과하므로, 내근직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조합원께서는 연간계약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질문04. 원수급인이 여러개인 경우 어느 회사를 원수급인으로 하나요?

☞ 각각의 도급비율을 확인한 후 도급비율이 큰 업체를 원수급인으로 입력합니다. 필요 시 추가기재사항란에 나머지 공동수급인의 입력도 가능합니다.

질문05. 공사장별 계약인 경우, 세부 공사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 확인되는 부분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당연히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는 조합원 본사 주소를 등록해 주시고, 추가기재사항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문06. 영업배상책임공제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

☞ 손해액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보험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자기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빈번한 작은 손해 사고에 대해서 재해조사나 이체처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계약자에게는 자기부담금액 설정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 보험금 = 손해액(배상책임액) - 자기부담금액

기타업무

질문01. 거래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으로 거래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지점에 업

무이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업무이관 신청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점 방문시에는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업무이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02. 회사 주주지 변경 시 조합에서 처리할 사항은?

☞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의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다운하셔서 변경전, 변경후 사항을 기재하시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점에 제출(FAX가능)하시면 변경처리 해드립니다. 또는 조합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03. 출자좌수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용자금잔액증명원 등 민원서류의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화면 좌측부분에 결산증빙서류출력을 클릭하시면 결산서류출력화면이 열립니다. 기준일 및 해당 민원서류를 체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인터넷민원서류발급에서 각 증명원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04. 대표자(약정연대보증인) 변경 시 조합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은?

☞ 첫째,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용평가 재평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합과 약정체결중인 경우 약정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용자금을 이용중인 경우 용자금 대체처

리를 하셔야 합니다.

각 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05. 약정체결 시 대표자가 반드시 조합에 방문해야 하는지?

☞ 약정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대표자 또는 최대주식보유자는 조합직원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약정서에 기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인터넷으로 약정체결 하는 경우는 범용공인인증서(법인, 대표자 모두 필요)를 통해 전자서명하므로 조합 방문없이 약정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 약정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6. 조합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조치 방법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는 조합원번호 5자리이고(예:01234) 관할 지점에 전화하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에는 조합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